

신탁계약 변경대비표

1. 대상 투자신탁 : 한화월지급단기하이일드증권 자투자신탁(채권)

2. 변경사유 :

- 환매대금지급일 단축에 따른 분배금 지급일 변경 (5영업일 → 3영업일)

3. 변경내용 :

구분	현행	변경후
제33조의 2(현금분배금)	집합투자업자는 매 1 개월 단위(분배시기 및 주기는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할 수 있음)로 법 제 242 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자산 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의 운용의 결과에서 발생하는 총 투자이익을 수익자에게 현금(이하“분배금”이라 한다)으로 분배할 수 있다 (이 경우, 분배금은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음). 1. ~ 2. (생략) 3. 분배금 지급일: 분배기준일로(당일포함)부터 5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한다 (이하 “분배금 지급일”). (이하 생략)	집합투자업자는 매 1 개월 단위(분배시기 및 주기는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할 수 있음)로 법 제 242 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자산 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자산의 운용의 결과에서 발생하는 총 투자이익을 수익자에게 현금(이하“분배금”이라 한다)으로 분배할 수 있다 (이 경우, 분배금은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음)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분배금 지급일: 분배기준일로(당일포함)부터 3영업일에 분배금을 지급한다 (이하 “분배금 지급일”). (이하 현행과 같음)
부칙	<u>〈신 설〉</u>	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법에 따른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일부터 시행한다.</u> <u>(2026.07.16)</u>